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8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김현정·정성호·김동아

김한규·최민희·김승원

정준호 • 박범계 • 문진석

정진욱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집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 1)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 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 도록 함.
-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 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 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 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 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을 "예금등을"로, "대처하기"를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로,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의4제3항"을 "제38조의4제3항 및 제39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및 제6호의2"를 ", 제6호의2 및 제6호의3"으로 한다.

6의3.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제21조제1항 중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 전단 중 "예금자등을 보호하기"를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

- 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의 요 구 방법·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 2.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 납
 - 3.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4.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5. 제39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심사
 - 6.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부대비용"을 "부대비용 및 제39조의4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6.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
- 9의2.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9의3.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 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의 차입금
- 3.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4.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 5.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6.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
- 2. 예금보험기금채권(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상환
- 3.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⑤ 공사는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⑥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 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3항·제4항, 제25조 및 제 26조의2를 준용한다.
-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신용질서의 안정"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로한다.

제3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8조"를 "제38조 또는 제39조의4"로 한다. 제39조의4 앞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제39조의8로 한다.

제6장(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제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

- 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 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 사는 자금지원의 신청 대상・방법・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사 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그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 지주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한다)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신청회사(신청회사가 금융지주

회사인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
-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3.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
- 2.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 3.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시장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 성
- ⑦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

- 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⑩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 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1. 채무의 보증에 따른 보증료
 - 2. 자금의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 3. 그 밖에 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제39조의6(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① 신청회사는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 2. 공사의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 3.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 자금상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

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피지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지원회사에 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9조의7(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피지원회사는 「상법」 제344조의 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대상 및 발행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가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41조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제1조(목적)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	예금등을
급할 수 없는 상황에 <u>대처하기</u>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급격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	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
율적으로 <u>운영함으로써</u> 예금자	<u>응하기</u>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	<u>운영하고 신속</u>
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	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함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u> 州</u>
제10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u>위원</u> 과반수의 출	④ 위원회는 <u>재적위원</u>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u>제38조의</u>	<u>제38</u>
<u>4제3항</u> 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	<u>조의4제3항 및 제39조의4</u>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 ~ 6의2. (생 략) <u><신</u> 설>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u>및 제6</u> 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 무

8. • 9. (생략)

② (생략)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 료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 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 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 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 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 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 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7, 제6호
의2 및 제6호의3
<u></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
료제출 요구 등) ①
<u> </u>
<u>이 경우 제5호</u>
및 제6호의 업무에 필요한 구
체적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u>고시한다.</u>
1.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

<신 설>

<신 설>

<신 설>

<u><</u>신 설>

<신 설>

- ②・③ (생략)
- 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따라야 한다.
- ⑤ 공사는 <u>부보금융회사가 보</u>

금융회사의 결정

- 2.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및 수납
- 3.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 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4.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의 정리 등
- 5. 제39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심사
- 6.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예금자등	등의	보호	와
금융	용제도의	안정성	유지	를	

__

⑤ -----<u>제4항에</u>-----

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급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7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1. ~ 5. (생략)

<신 설>

-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
②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9의3.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10. (현행과 같음)

-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생략)
-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 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 5. (생 략) ④ (생략) <신 설>

(3)
 1. (현행과 같음) 2
부대비용 및 제39조의
4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과 그 부대비용
3. ~ 5.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 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 험기금의 각 계정 및 특별계정

- <u>과</u>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 금을 회수한 자금
- 4.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 5.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6.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그 밖의 수입금
-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

과 그 부대비용

- 2. 예금보험기금채권(제2항제1 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한 정한다)의 원리금 상환
- 3.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⑤ 공사는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 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⑥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있다.
-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제24조의3제3항·제4항, 제25조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 호 및 <u>신용질서의 안정</u>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 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 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 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 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 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 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

	하여	ユ	밖에	필요	.한 시	-항은
	대통령	성령 9	으로 전	성한다	- <u>.</u>	
제	26조	의2(예금	보험기	기금채	권의
	발행	등)	1			
		금융	-제도의	의 안	정성 -	유지-
	(<u>2</u>) ~	6)	(현행			
					특례]) ①
·				· 		

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 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u>제38조</u>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 여 양도받는 자산

2. · 3. (생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1.				 	
				 제383	조
	<u>또는</u>	제39조	<u>:의4</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제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공사에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 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 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 충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 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지원 의 신청 대상・방법・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사가 공 고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그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한다)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신청회사(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금 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 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야 한다.

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3.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 1.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 무상태
- 2.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 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 3.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시장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 ①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 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 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⑧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 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신 설>

<신 설>

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공
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
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
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에 따른 보증료
2. 자금의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3. 그 밖에 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39조의6(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① 신청 회사는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 2. 공사의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 황을 개선하는 방안
- 3.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자금상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용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피지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지원회사에 그 확인을 요구할수 있다.

제39조의7(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피지원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대상 및 발행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가 제24조의5에 따른 금 용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제39조 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 우에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제6장 벌칙</u> <u>제39조의4</u> (생 략)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21조제1항</u>, 제21조의2제8 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 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생략)

제7장 벌칙
<u>제39조의8</u> (현행 제39조의4와 같
<u></u> 이
제41조(벌칙)
<u>.</u>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2. (현행과 같음)